



병원 외부회계감사와 의료채권

정책동향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경영공학박사 이 용 균

E-MAIL : KYOON@GSM.KAIST.EDU

Tel. 02-705-9291



목 차

- I. 최근 관련정책 동향
- II. 정부 의료채권 법률안
- III. 의료기관의 외부회계감사
- VI. 결론 및 전망

I. 최근 관련정책 동향

민간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선진화

-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 자본조달 구조 및 경영 다변화 (의료채권 도입, 부대사업 확대 등)
 -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적 접근

- 필수 공익의료서비스(응급, 혈액 등)
- 공중보건서비스(건강증진, 접종 등)
- 공공의료체계의 역할 재정립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로운
효율적 의료시스템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 방지

- 빈곤층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 확대
-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산업 육성

- R&D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 해외환자 유치 전략 추진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 건강서비스 시장 발굴, 확대

자료:박하정,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대응방안(보건 행정학회), 2009.05

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추진 내용

일정	사업내용
2009년6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허용
2009년 10월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2009년11월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여부 결정
2009년12월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2011년 1월	중소병원 지정 및 운영
2011년 2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도 시행

자료 : 월간 닥터비즈니스 리뷰, 2009 July, Vol.2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 의료기관은 자기자본 또는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없음

* 타인자본 의존도('06) : 의료기관 60.6%, 제조업 49.7%, IT산업 43.2%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대상
- 무담보채권 형태로 자본금의 4배 이내
* 일본 : 담보채권, 미국 : 지방채
- 조달자금은 의료목적에만 사용
- 회계감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
- 도입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자료가 부족
-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 후, 연내 정책방향 결정 예정

자료:박하정,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대응방안(보건 행정학회), 2009.05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지원사업 (M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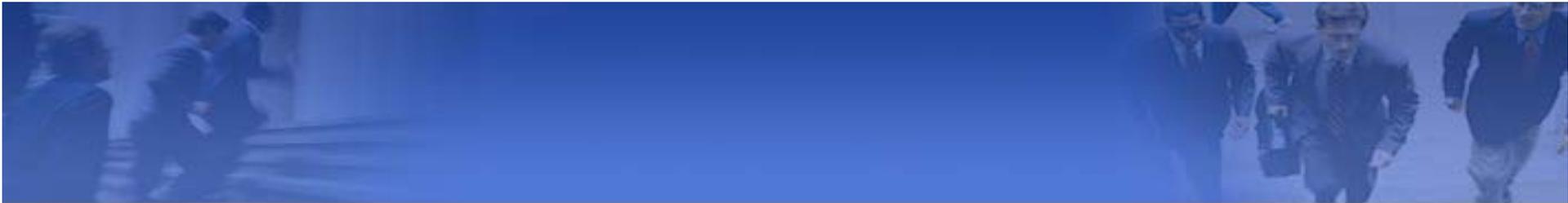
- 의료법인의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의료 이외 서비스 수행 허용 추진
- MSO가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자본의 출구와 입구를 통제
 - 출구통제 : 의료기관이 MSO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
 - 입구통제 : 의료기관의 과도한 MSO 계약이나 수익 부여 행위 통제
- MSO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보완장치 마련
-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의료기관 관리비용의 규모의 경제 달성 기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과 타 의료법인과 합병 허용 추진
 - 법령에 대상 법인을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대형화 방지
 - 고용승계, 일정기간 운영의무 부여 등 의료 접근성 약화 방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은 관련 법령에 합병규정 마련
-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여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

II. 정부 의료채권 법률안

- 도입배경 : 2007년도 6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7년도 12월에 원안을 동의함.
- 규제개혁위원회 : 의료채권의 발행기관 제한·조달자금의 용도 제한·법인 회계 등 과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정부법안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2008.10.21일) 제출
- 법안 제안 : 의료채권 발행 조달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 및 사용처 명시



- 의료채권 발행기관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1,619개)이 해당됨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기타 민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의료채권 발행금액 : 상법과 마찬가지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비영리 공공기관들의 채권발행 상한액

구 분	해당조항	기준	발행 상한액
의료채권법(안)	제7조	순자산액(기본금+잉여금 =자산총액-부채총액)	4배
상법	제470조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액	4배
한국전력공사법	제 16조	공사자본금+적립금	2배
대한주택공사법	제 16조	자본금+적립금	4배
한국토지공사법	제 11조	공사자본금+적립금	15배

의료채권 도입배경

- (1) 의료기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채권제도 도입을 결정
- (2)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자기신용에 근거하여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3)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신규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료채권제도 Time Schedule

- 법제정 일정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제출 : 2009년 상반기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정책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2008.02.22일자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가.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안 제2조)

-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

- (2)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안 제4조)

의안 번호	1571
----------	------

제출연월일 : 2008. 10. 21.
제 출 자 : 정 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안 제4조)

- (1)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 병원만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
- (2)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개설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고, 해당 의료기관 모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채권 조달자금의 사용 용도(안 제5조)

-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는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이 의료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 (2)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 주요이슈:금융권 단기채무 변재에 대한 승인 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채권 발행요건과 총액(안 제6,7조)

-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발행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발행요건을 갖추게 하거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행총액 정함
 - (2)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 - 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함.
- 주요이슈 : 의료기관 기본자산의 재평가 문제점(기업회계법 적용 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채권 모집 및 발행(안 제8조~28조)

(1)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의료채권은 「상법」 상의 회사채와 다르므로 의료채권의 모집·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에 관한 사항 중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상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2) 의료채권의 모집·발행과 의료채권자 집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법」 상의 회사채와 거의 같게 규정함

- 주요이슈 : 의료기관 회계용어,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의 불일치(의료부대수익, 기타의료수익, 전출금 등)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채권 발행 기타 쟁점사항(1)

의료채권은 특수채권으로 「상법」상의 채권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의 2개소 이상에서 적정등급(일반적으로 BBB) 판정을 받아야 함.

- 중소병원의 경우 ‘신용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 등 중소병원 에 대한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적정대안

국내 병원의 병원 및 병상비율(2009년 현재)

구분	병원수		병상수	
총계	2,217개소		359,299병상	
300병상 이상	252개소(11.8%)		140,832병상(39.2%)	
300병상 미만	1,875개소 (88.2%)	의료법인 488(26.0%)	218,467 병상 (60.8%)	의료법인 67,474(39.2%)
		개인병원 1149(61.3%)		개인병원 120,816(55.3%)
		기타 238(12.7%)		기타 30,177(13.8%)
		소계 1,875(100.0)		소계 218,467(100.0)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채권 발행 기타 쟁점사항(2)

국내 의료기관들의 순이익율(net profit)이 2%로서 타 산업의 채권에 비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매력도가 높지 않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도입초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06
의료기관	전체병원	60.9	62.9	65.1	65.3	62.9	60.6
	민간병원	61.9	64.5	68.6	67.7	66.5	64.2
제조업		64.6	57.5	55.2	51.0	50.2	49.7
정보산업		54.1	54.2	53.8	47.8	44.3	43.2
전문서비스업		60.2	48.8	44.8	50.9	60.9	63.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2008. 10. 21)

의료채권 발행 기타 쟁점사항(3)

- 의료기관의 도산 등에 대한 채권자 보호조치로 채권발행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채권자집회 등 채권자 보호장치도 마련되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준 통일에 따른 대안이 모색되어야함
-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주주의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모색.

구 분	해당조항	기준	발행 상한액
의료채권법(안)	제7조	순자산액(기본금+잉여금 =자산총액-부채총액)	4배
상법	제470조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액	4배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공사자본금+적립금	2배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자본금+적립금	4배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공사자본금+적립금	15배

참고 : 미국 및 일본 의료채권 사례

구분	미국	일본
법적 성격	유가증권(지방채권)	금전소비대차
발행 조건	면세	비 면세채권
발행 절차	병원채권발행(주정부, 금융기관)→투자은행 등 인수자→투자자→채권발행 금액 수령	병원이 직접발행 개인, 은행 및 지방정부
정부의 관여	주정부 및 Financing Authority 허가 및 심의	정부 가이드 라인 제정
기타	신용평가(S&P, Moody)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2005.03

참고 : 일본의 의료채권

발행법인	(의)博愛會		(재)日本침례교連盟의료단	(의)北九州병원
본부소재지	토치기현 쿠로이소시 菅間 恒		교토시 사쿄구 白方 誠彌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増田 康治
이사장 (발행조건)	*제2회 총액 상환기간 발행일 금리(연률)	*제3회 총액 상환기간 발행일 금리(연률)	5억엔 10년 2005년11월 1.80%	3억엔 5년 2005년9월 N.A
자금용도	재택총합케어센터(가칭)의 건설자금		2006년 4월 입공예정의 신병원 건설자금	고도의료기기(암치료용:리니악)등의 구입비용
인수자	제1회의 대상자(환자, 병원관계자, 은행)및 일반		지역주민, 연계처, 병의원, 거래업자, 법인임직원 등	西日本시티은행 일괄

참고 : 2004년 8월에 후생노동성에서 의료기관채 발행 가이드라인이 공표.

출처 : 이용균, 남은우,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병원경영연구원, 2007.1

Ⅲ. 의료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의료기관 구분	제출처	외부감사 여부	관련법령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복지부	X	의료기관회계처리규칙 제11조
공익법인	국세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사립대학병원	교과부	○	사립학교법 제31조
국립대학병원	교과부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1조
서울대병원	교과부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7조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09.1.1] [법률 제9269호, 2008]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 2008. 3.14] [법률 제8888호, 2008. 3.14, 일부개정]

제29조 (회계의 구분)

-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 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
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
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려는 것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개정 2007.7.27>) ① 「의료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3조 (회계의 구분) ①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재무제표) ①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제5조 (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제6조 (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결산서의 제출)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부칙 <제257호,200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등가물		
2. 단기금융상품		
∴		
(2) 재고자산		
1. 약품		
2. 진료재료		
∴		
II. 고정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투자유가증권		
∴		
(2) 유형자산		
1. 토지		
2. 건물		
∴		
(3) 무형자산		
1. 영업권		
2. 창업비		
∴		
(자산총계)		
부채		
I.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		
II. 고정부채		
1. 장기차입금		
2. 외화장기차입금		
∴		
(부채합계)		
자본		
I. 자본(기본재산)		
1. 기본금		
- 법인기본금		
- 기타기본금		
II. 잉여금		
1.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		
2. 이익잉여금		
- 차기이월잉여금		
- 당기순이익(순손실)		
∴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I. 의료수익		
1. 입원수익		
2. 외래수익		
∴		
(의료수익계)		
II. 의료비용		
(1) 인건비		
1. 급여		
2. 퇴직급여		
∴		
(2) 재료비		
1. 약품비		
2. 진료재료비		
∴		
(3) 관리운영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		
(의료비용계)		
III. 의료이익(손실)		
IV. 의료외수익		
1. 의료부대수익		
2. 이자수익		
∴		
V. 의료외비용		
1. 의료부대비용		
2. 이자비용		
∴		
VI. 경상이익(손실)		
VII. 특별이익		
1. 자산수증이익		
2. 채무면제이익		
∴		
VIII. 특별손실		
1. 재해손실		
IX.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X.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		
XI. 당기순이익(순손실)		

기본금변동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본금변동계산서

제 (당)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당)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I. 기본금				
1. 법인기본금				
2. 기타기본금				
II. 자본잉여금				
1. 자산재평가적립금				
:				
III.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				
IV. 이익잉여금처분액				
1. 기본금대체액				
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현금흐름표

제 (당)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당)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당)기		제 (전)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순손실)				
(2) 현금의유출없는비용등의가산				
1. 감가상각비				
2. 퇴직급여				
:				
(3) 현금의유입없는수익등의차감				
1. 채무면제이익				
2. 외화환산이익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 재고자산의감소(증가)				
2.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단기금융상품의처분				
2. 토지의처분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현금의단기대여				
2. 토지의취득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단기차입금의차입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단기차입금의상환				
:				
IV. 현금의증가(감소)(I + II + III)				30
V. 기초의현금				
VI. 기말의현금				

병원회계규칙 : 제기되는 문제점

1. 계정과목의 불일치 :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불이익 규정 :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병원이 시행치 않은 경우 불이익규정이 미비됨)
3. 병원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용어 불일치(의료채권 도입 시)
(예 : 사립학교 재단전출금, 부대수익, 의료외 수익, 기본재산의 재평가 등)

VI. 결론 및 전망

복지부 : 정책기조 및 인식변화

생활수준 향상

- 질 높고 고급화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 * 치료의 질 뿐만 아니라 Amenity 추구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
 - * 06년 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가 2.1조 달러(3,000조)에 달함

소비자 인식변화

- 의료사고 등에 있어 소비자 권리 확보 노력 증가
 - *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요구 점증
 - * 정확한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가격 정보 공개 등

공급체계 변화

- 병원의 대형화, 전문화로 고급 다양화된 의료수요에 대응
 - * 고급 의료기기 도입, 병상 증설 등으로 대규모 자본조달 요구
- 의료시장 개방, 해외 환자 유치 등 국제 경쟁력 확보 필요

자료:박하정,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대응방안(보건행정학회), 2009.05

- 비영리 병원의 수익추구 심화 및 의료비 상승 → **병원의 공금리 금융부채의 채권자금 전환효과**
 - 비영리 법인의 채권발행은 영리행위 → **타기관(공공, 특수, 지방정부 등) 비영리기관의 채권도입**
 -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 의료채권 발행지원**
- * 평가 : 의료기관은 자기자본 또는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없으므로 서비스 경쟁력 한계 인식
- * 전망 : 미국, 일본식 절충식 제한적인 의료채권의 발행가능성



감사합니다